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835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redacted]주식회사

2. [redacted] 유한회사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2. 19.

판 결 선 고 2016. 3. 4.

주 문

1. 원고[redacted]유한회사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redacted]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4. 원고 [redacted]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분 재산세 등 합계 34,810,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9. 14. 원고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신탁'이라 한다)이 2014. 1. 1. 이전에 신탁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34,810,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이하 '유아이'라 한다)는 원고 [redacted]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및 우선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redacted]는 이 사건 처분으로 결과적으로 채권 회수에 있어서 재산세 상당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redacted]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redacted]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되기 전까지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그런데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2014. 1. 1.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 종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 즉 재산의 등기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실이라는 지방세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 나아가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고(신탁법 제46조 제2항), 이를 위해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신탁법 제48조 제2항)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부칙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정도가 개정 지방세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8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아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redacted]신탁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부과내역

순번	동	호	납세금액(원)	세목(원)
1		401	1,147,610	재산세 485,720 도시계획세 272,000 공동시설세 292,750 지방교육세 97,140
2		401	1,903,550	재산세 790,710 도시계획세 442,800 공동시설세 511,900 지방교육세 158,140
3		401	1,833,460	재산세 768,790 도시계획세 430,520 공동시설세 480,400 지방교육세 153,750
4		401	979,560	재산세 457,000 도시계획세 255,920 공동시설세 175,240 지방교육세 91,400
5		401	1,001,750	재산세 464,540 도시계획세 260,140 공동시설세 184,170 지방교육세 92,900
6		401	969,620	재산세 454,470 도시계획세 254,500 공동시설세 169,760 지방교육세 90,890
7		401	3,086,750	재산세 1,092,210 도시계획세 611,640 공동시설세 1,164,460 지방교육세 218,440
8		401	3,435,430	재산세 1,201,270 도시계획세 672,710 공동시설세 1,321,200 지방교육세 240,250
9		401	2,952,760	재산세 1,050,310 도시계획세 588,170 공동시설세 1,104,220 지방교육세 210,060
10		401	10,462,000	재산세 3,382,460 도시계획세 1,894,170 공동시설세 4,508,880 지방교육세 676,490
11		401	7,037,820	재산세 2,327,970 도시계획세 1,303,660 공동시설세 2,940,600 지방교육세 465,590
		합계	34,810,31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관계 규정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부칙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7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도 제4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7조(보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